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하남시장(복지정책과)
제출일 : 2021. 11.

1. 제안이유

○ 상위법「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용어(기간)를 명확히 하여 시민에게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 긴급복지 조례 위기 상황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용어(기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1호)
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기 상황의 기준 신설(안 제3조제10호)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제도인 ‘긴급지원’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